

### III.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

Q1	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?
A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라 재산정된 보험료 간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부과하는 절차</li> </ul>
Q2	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 되나요?
A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처리하였으나, '25년('24년도 귀속분)부터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청에서 자료 연계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.</li> <li>▶ 다만,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거나, 공단과 국세청의 보수총액 신고대상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등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공단과 국세청에 보수총액 신고대상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(항목) 국외근로소득, 법인대표자 인정상여,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등</li> </ul> </li> </ul>
Q3	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요?
A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근로장려세제(EITC) 지급을 위해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에 대해 반기별*로 소득자의 인적사항, 근무기간, 급여액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입니다.</li> <li>* 2027년부터는 매월 신고로 변경 예정</li> </ul>
Q4	모든 사업장이 간이지급명세서로 연계정산 되나요?
A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네,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대상이 됩니다.</li> <li>※ 기존에는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자격관리 방식 등의 차이로 연계정산 제외하였으나, 2026년(2025년 귀속)부터는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연계정산합니다.</li> </ul>

<b>Q5</b>	<b>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불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</b>
<b>A5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1월 31일(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, 다음 영업일까지)까지 '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(취소)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※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 후 별도의 제외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, 매년 연계정산 제외 신청 상태가 유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▶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 사업장은 2월 중 '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'가 발송되며, 3월 10일까지 공단에 보수총액 통보서를 신고해야 합니다.</li> </ul>
<b>Q6</b>	<b>신청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을 못하였는데, 어떻게 하나요?</b>
<b>A6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'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'에 직장가입자(근로자)의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작성하여, 3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▶ 다만, 신청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을 한 사업장에 한해 2월 중 보수총액 통보서가 발송되므로, 제외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고객센터, 지사, EDI 또는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'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'를 발급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.</li> <li>※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→ 정책·제도 → 자료실 → 서식자료실에 게시</li> <li>※ EDI사업장: 신고/제증명 바로가기 → 신고/신청 → 건강보험료 →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 → 보수총액 통보서 신청</li> </ul>
<b>Q7</b>	<b>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대상 사업장인데 기존과 같이 보수총액 신고를 해도 되나요?</b>
<b>A7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네, 가능합니다.</li> <li>▶ 사용자가 3월 10일까지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가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.</li> <li>▶ 다만, 1월 31일(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, 다음 영업일까지)까지 공단에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을 한 사업장에 한해 2월 중 보수총액 통보서가 발송됩니다.</li> </ul>

<b>Q8</b>	<b>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을 했는데, 다시 연계정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?</b>
<b>A8</b>	<p>▶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 연도 귀속분 연말정산은 간이지급명세서로 연계정산됩니다.</p> <p>※ 다만, 제외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불가 사유에 해당하면 간이지급명세서로 연계정산 불가</p>
<b>Q9</b>	<b>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다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</b>
<b>A9</b>	<p>▶ 고객센터(1577-1000), 지사 또는 EDI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- EDI 서식 재전송 경로: 신고/제증명 바로가기 → 신고/신청 → 건강보험료 →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 → 보수총액 통보서 신청</p> <p>※ 서식 게시: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→ 정책·제도 → 자료실 → 서식자료실</p>
<b>Q10</b>	<b>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이 변경되었는데 공단에는 어떻게 통보하면 되나요?</b>
<b>A10</b>	<p>▶ 사용자가 국세청에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되며, 이후 신고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보수총액 신고금액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됩니다.</p>
<b>Q11</b>	<b>작년 11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?</b>
<b>A11</b>	<p>▶ 퇴직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. 이 때 해당 귀속연도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, 퇴직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</p>
<b>Q12</b>	<b>작년 12월 3일에 입사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?</b>
<b>A12</b>	<p>▶ 2025. 12. 2. 이후 입사자(12월 보험료 미부과자)는 2025년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.</p>

Q13	<b>귀속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신청자는 어떻게 정산하나요?</b>
A13	<p>▶ 정산연도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보수총액 통보서로 신고하여 정산합니다.</p> <p>※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기간 동안 받은 보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기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</p>
Q14	<b>근무월수와 정산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</b>
A14	<p>▶ 근무월수: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</li> <li>-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단에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(휴직발생 해당 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, 단 휴직시작일이 매월 1일 또는 휴직종료일이 매월 말일까지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)</li> <li>-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(직위해제, 무노동무임금, 기간제교사의 방학기간 등)은 근무월수 및 보수에 제외</li> </ul> <p>▶ 정산월수: 전년도(귀속연도)에 보험료가 부과된 기간(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음)</p> <p>예) 2025. 1. 12.자로 입사하여 2025. 12. 31.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의 경우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무월수: 보수가 지급된 1월~12월(12개월)</li> <li>- 정산월수: 보험료가 부과된 2월~12월(11개월)</li> </ul>
Q15	<b>2개 이상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</b>
A15	▶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으로 각각 신고합니다.
Q16	<b>고시적용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</b>
A16	▶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므로, 고시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신고합니다.

<b>Q17</b>	<b>보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?</b>
<b>A17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, 근로 제공이 정지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고 근로가 제공된 기간의 보수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.</li> </ul>
<b>Q18</b>	<b>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시 금액은 어떻게 분할되나요?</b>
<b>A18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정산보험료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 각 회차별로 균등분할 고지되며, 10원 미만 금액은 1회차에 합산하여 고지합니다.</li> </ul>

## IV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상 보수의 범위

###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말하는 보수의 의미

- 보수란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임
  - 단, 퇴직금, 현상금, 번역료 및 원고료,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되, 같은 법 제12조제3호차목·과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

### 2. 유형별 보수 구분

- 식대 …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러목

- ▶ 식사·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20만 원(연간240만 원) 이하 식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… 2023년 1월부터 적용
- ▶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 시 현물은 비과세되어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나, 현금은 과세이므로 보수에 포함

- 자가운전보조금 …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호

- ▶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(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, 가족 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제외)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,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되어 보수에서 제외
  - ※ 근로자 소유 및 임차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됨

- 국외근로소득(원양어업선박, 외국항행 선박·항공기 및 북한지역 근로에 한함)

- ▶ 「소득세법」에 월 100만 원(원양어업 선박,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 원)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더라도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

- 정부·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

- ▶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조제17호에 의거 지방의무이전기관 종사자에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

○ **비과세(보수 제외) 학자금의 범위** …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아목 및 시행령 제11조

- ▶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(대학원 및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)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·수업료·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에 한도로 하여 보수에서 제외
  -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·훈련을 위하여 지급 받는 것일 것
  -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
  - ③ 교육·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·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
- ※ 자녀학자금은 「소득세법」 제52조 특별공제 대상에서 삭제(2014. 1. 1.부)되었고, 비과세 소득도 아니므로 보수에 당연 포함

○ **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, stock option)**

- ▶ 스톡옵션(stock option)은 근로계약 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,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,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(이익)은 재직기간 중 행사 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
- ▶ 다만,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법상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미포함
  - ※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: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임
- ▶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보수 제외

기간(행사일)	비과세 기준
2021. 1. 1.~2021. 12. 31.	행사이익 3천만 원
2022. 1. 1.~2022. 12. 31.	행사이익 5천만 원
2023. 1. 1.~	행사이익 2억원, 기업 총 누적한도 5억

○ **법인대표자 인정상여**

- ▶ 「법인세법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인정상여로 확인되는 경우 보수에서 제외(2015두37525)
  - ※ 대표자, 공동대표자, 사실상의 대표자 모두 포함

○ **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**

- ▶ 2013년도부터는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보수에서 제외

○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... 「소득세법」 제22조제3항

▶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3조의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(제2016-이의-02327호)

※ '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'의 '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'을 뜻함

○ 해고예고수당

▶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 「근로기준법」 제26조(해고의 예고)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으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아 보수에서 제외

○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액

▶ 연봉계약 체결 시 노·사간 합의(계약)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,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이행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,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기간을 이행하였을 경우 선납한 근로소득금액 중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재정산하게 되므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해당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

○ 출산수당·보육수당

▶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머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

○ 창립기념일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한 격려금

▶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, 이는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동 지급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보수에 포함

○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

▶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, 판결문상의 내용에 부당해고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을 시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

▶ 단,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

○ **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** ...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더목

- ▶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제 기간의 총급여액이 3,000만 원(2020.2.11.시행 개정 전 2,500만 원)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한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
- ※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
- 월정액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(주휴수당 포함)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보수에 포함

**【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】**

-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
-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
-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, 돌봄·미용·여가 및 관광·숙박시설·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, 매장 판매 종사자, 상품 대여 종사자,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, 운송·청소·경비·가사·음식·판매·농림·어업·계기·자판기·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
- ※ 단,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,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5억 이하

< 공장·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(예시) >	
구내식당 등 취사 종사자	보안업무 종사자
건물관리 및 청소 종사자	구내이발, 세탁공
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종사자	전화, 전신기 조작용
물품 및 창고관리 종사자	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
노사 관계 종사자	수송운용관리자

※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아님

○ **원어민교사가 지급받는 급여**

- ▶ 전액 보수에 포함: 월급여, 정착금, 항공료, 입·출국지원비(신규계약 및 계약완료)

○ **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** ...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

- ▶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,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
- ▶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(퇴직)정산 근무월수에 포함하므로 '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'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'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'을 하면 '89 그 밖의 사유' 대상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, 연말(퇴직)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게 됨을 주의
- ▶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는 경우,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아님

○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 ...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

- ▶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고 근무 월수에도 제외(근무월수 계산 방식은 다른 휴직과 동일)
  - 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(2024. 12. 24. 개정)
    - 월 70만 원(하한액)~250만 원(상한액)
- ▶ 공무원 보수규정의 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므로 보수에서 제외

○ 연구보조비·연구활동비 ..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조제12호

- ▶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
  -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(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)의 교원
    - ※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연구보조비를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보수에 포함
    - ※ 중학교이상은 연구보조비라는 수당으로 지급되고 초등학교는 보전수당, 보전수당 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
  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(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)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
    - ※ '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'라 함은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.
      - 1.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(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)
      - 2. 건물의 방호·유지·보수·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
      - 3.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이 종사하는 자
  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법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(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

○ 직무발명보상금 ...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어목 및 시행령 제17조의3

- ▶ 종업원 등 또는 대학원 교직원이 지급받는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연 700만 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보수에서 제외,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수에 포함
  - ※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수에 미포함

## ○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

- ▶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에 의한 세액 정산 중 선택하여 국세청에 신고 가능
- ▶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·공제·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소득을 모두 보수에 포함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, 제3항에 따라 전체 근로 소득 중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전체 근로소득에서 제외

## ○ 우리사주

- ▶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, 보유하게 하는 제도임
- ▶ 우리사주 취득에는 개인(조합원) 출자에 따른 것과 법인 출연(금)에 의한 것이 있으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라 과세이연 선택 시 공제받은 과세이연금액은 인출연도 총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음

### 【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과세이연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)】

-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하여 우리사주 취득 시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 원(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천500만 원)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후,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시점에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
- 법인 출연(금)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%와 500만 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후, 조합원이 해당 배정 주식을 인출할 때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